
Policy and Law Report _Vol.15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9.05.~ 2022.09.12.) -

September 13,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고용 노동부	<p>• <u>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실시</u></p> <p>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실시</p> <p>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한 과정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만난 원·하청 및 노사 모두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업 경쟁력 회복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 상생·연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함께했다고 밝히며 노·사·정 간 역할 분담과 사회적 대화 추진방안에 대한 조언을 요청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선업의 구조적 특성, 현장 상황 등 이중구조 배경 및 형성과정 ②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그 한계 ③ 원·하청 노사 상생협의체 구성 등 자율적인 연대·상생 방안 	2022-09-06
국토 교통부	<p>• <u>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추진</u> -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p> <p>주요 논의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 확대’** * 다른 업종 추가 신청시 자본금·기술인력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복수면허(예: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시 중복특례는 “1회로 한정”함에 따라 면허 반납 후 재등록시 특례적용이 불가 → 중복특례를 “1개 업종”으로 개정 -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 변동 시행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 방식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수조정률 방식은 별도 언급이 없어 적용 가능성 모호 → 지수조정률 방식도 명시 -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하여, Eng업체의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 확대 * 현재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 중 -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시 시공사·감리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건발생 초기 소방청 등과의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집중 	2022-08-31

부처	내용	일시
	<p>* (현행)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 → (개선)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p> <p>- 석공기능사의 경우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석공기능사가 석재를 이용하는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건축, 토목 공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p> <p>*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p> <p>②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비</p> <p>-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p> <p>*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여객터미널 공사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p> <p>- 250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형식)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p> <p>* 차명, 제작자, 차량중량,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표</p> <p>③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p> <p>- 경미한 건축물 증축 및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p> <p>* 기존 대지 면적의 10%이내(최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10% 한도내)</p> <p>- GB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냉장시설)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p> <p>*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m³(바닥면적 10.56m²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농업기계화법 시행규칙」 별표 1)</p> <p>** 현재 GB내 설치 허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p> <p>④ 국토교통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p>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p>• 전환사채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마련</p> <p>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전환가액 조정, Refixing)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모발행 CB에 대해 주가 상승시에도 상향조정을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가액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라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일반주주들의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 <p>② (콜옵션 제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 부여 CB 발행시, 콜옵션 행사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을 한도로 제한하고, 콜옵션 관련 공시의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옵션을 활용하여 CB가 최대주주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2022-09-07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9.6. 시행) <p>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수입할 수 있는 휴대품·별송품의 면세 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하고,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술의 면세 한도를 1병에서 2병으로, 합산 용량은 1리터에서 2리터로 늘리며, 입국장 보세판 매장의 판매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하는 한편,</p> <p>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09-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9.6. 시행) <p>수입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p>	2022-09-06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공통	<p>•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소관부처</th> <th>입법예고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획재정부</td> <td>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r> <td>복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td> </tr> <tr> <td rowspan="2">교육부</td> <td>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td> </tr> <tr> <td>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td> </tr> <tr> <td rowspan="3">과학기술 정보통신부</td> <td>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r> <td>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r> <td>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td> </tr> <tr> <td>외교부</td> <td>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r> <td>법무부</td> <td>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r> <td rowspan="2">국방부</td> <td>군인복지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td> </tr> <tr> <td>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td> </tr> <tr> <td rowspan="3">행정안전부</td> <td>지방재정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td> </tr> <tr> <td>풍수해보험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td> </tr> <tr> <td>국민제안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td> </tr> <tr> <td rowspan="2">문화체육 관광부</td> <td>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r> <td>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r> <td>농림축산 식품부</td> <td>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td> </tr> <tr> <td rowspan="2">산업통상 자원부</td> <td>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td> </tr> <tr> <td>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td> </tr> <tr> <td rowspan="2">보건복지부</td> <td>국민건강보험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r> <td>노후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r> <td>환경부</td> <td>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td> </tr> <tr> <td>여성가족부</td> <td>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r> <td rowspan="2">국토교통부</td> <td>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r> <td>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body> </table>	소관부처	입법예고명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복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풍수해보험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문화체육 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 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노후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2-09-07
	소관부처	입법예고명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복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풍수해보험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문화체육 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 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노후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25 376 459 421">해양수산부</td> <td data-bbox="475 376 1305 421">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r> <td data-bbox="325 432 459 510">중소벤처기업부</td> <td data-bbox="475 432 1305 510">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td> </tr> </table>	해양수산부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해양수산부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p>과학 기술정보 통신부</p>	<p>•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2022.6)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보편적 의무 관련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리선 인프라 없는 지역의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 (안 제2조제2항제1호에 라목 신설) ② 시내전화를 대체하는 인터넷전화와 요금감면 대상서비스인 인터넷전화를 구분하기 위한 단서 추가 (안 제2조제2항제3호마목) ③ 보편적 의무 손실보전금 산정대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전화 추가 (안 제5조제1항제3의3호 신설) ④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근거 마련 (안 제10조) ⑤ 기간통신사업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20조) ⑥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인가·신고시 신고증명서 발급 (안 제20조 및 안 제22조) ⑦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 시 발급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제출 서류 목록에서 삭제 (안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⑧ 스미싱 및 대포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시 해당 이용자에게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통지와 이용자의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7조의5 및 제37조의6) 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고유 식별번호 등록·해제 등 사업자 관리 의무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1조) ⑩ 기간통신사업 신고에 관한 사무를 소속 기관의 장(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안 제65조) <p>※ 의견 제시기간 : 9/8(목)~10/18(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로 제출</p>	<p>2022-09-08</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p>•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의 적정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허가·승인을 받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되,</p> <p>시설 설계 당시 예측한 폐기물의 발열량보다 실제 반입폐기물의 발열량이 낮은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폐기물 과다소각 금지 (안 [별표 11]제2호 가목1)가)(9), 다목6)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분하거나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허가·승인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반입 폐기물의 발열량이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 추가 소각 허용 <p>※ 의견 제시기간 :9/7(수)~9/16(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p>	2022-09-0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p> <p>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자 월별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액”으로 변경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시 재인가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p> <p>이에 따라,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을 차등 설정하고,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는 “월 보수액”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세부사항 규정 (안 제56조의7제3항 제5항) -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피보험자격 관리 및 월보험료 납부를 기한내에 이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하며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함</p> <p>②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 설정 (안 제48조제1항·제2항) - 재인가 제한기간은 자진 폐지 및 인가 취소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 설정하고, 대행기관이 인가취소 회피 목적으로 자진폐지 신고한 경우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인가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p> <p>③ 예술인·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요건 완화 (안 제28조제3항)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현행 두루누리 지원 요건 중 사업규모 제외,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도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p> <p>④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9조의3, 제56조의6 등) - 월평균보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 조문(제19조의3)에서 노무제공자는 삭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규정(제56조의6)에 월 보수액의 신고 시기,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p> <p>※ 의견 제시기간 :9/7(수)~10/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로 제출</p>	2022-09-0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공정거래 위원회</p>	<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p> <p>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설”로 구성·운영되는 상습법위반 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운영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위원회 비상설회의체 전환 (안 제25조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의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p>※ 의견 제시기간 :9/7(수)~9/16(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로 제출</p>	<p>2022-09-07</p>
<p>금융 위원회</p>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안 제176조의7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상장법인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p>※ 의견 제시기간 :9/5(월)~10/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로 제출</p>	<p>2022-09-05</p>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 「<u>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u>」 </p> <p>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로서 다단계 판매와는 다른 형태임. 이는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현재 약 70만명의 판매원들이 종사하는 등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 </p> <p>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비대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심각한 매출 감소에 따른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거래 시장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p> <p> 이는 전자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가 다단계 판매까지 허용된 반면, 후원방문판매는 직접 대면방문을 필수적 요소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상 “방문”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되었기 때문임 </p> <p> 이에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p> <p> 한편, 이 경우 후원방문판매가 다단계 판매처럼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불측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p> <p> 이에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의 개설·운영 주체를 본사로 단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하며,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행위규제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화 규정과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규정 및 판매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안 제2조제7호 및 제29조제2항) </p>	2022-09-06
	<p> • 「<u>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6인)</u>」 </p> <p>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p> <p> 허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가맹점들이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유통 등 운영상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p>	2022-09-07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이에 법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3항 신설)</p> <p>•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최근 상점 및 음식점 등에서 현금결제를 거부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p> <p>현금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보편화되는 이른바 ‘현금없는 사회’로의 이행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결제수단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6항 및 제84조제3항 신설 등)</p>	2022-09-07
기획재정위원회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p> <p>그런데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한 차량 제조용 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차량 제조사의 신차 출고가 적체되고 있어 해당 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p> <p>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각각 300만원, 6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109조)</p>	2022-09-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4인)」</p> <p>현행법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p> <p>그러나 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신고의무 회피가 가능하여 역외재산 은닉 및 상속·증여세 탈루에 악용될 수 있음</p> <p>실제로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 현황에 따르면 해외신탁을 활용한 역외탈세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특성상 국세청이 역외은닉자산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의 경우 자국민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이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보유내역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 (안 제52조, 제54조, 제62조)</p>	2022-09-02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제작자가 이러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때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p> <p>그런데 영상콘텐츠 사업은 관광·상품 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또한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이자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수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그 홍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홍보 영상의 제작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제1항)</p>	2022-09-07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 위원회</p>	<p>•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p> <p>그런데 최근 들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식품산업 분야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푸드테크산업이 각광받게 됨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트렌드가 확산되고 식량 안보가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서 푸드테크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p> <p>이에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8호·제9호,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각각 신설)</p>	<p>2022-09-07</p>
<p>환경노동 위원회</p>	<p>•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p> <p>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는 선형경제구조를 종식하고 생산, 소비,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p> <p>국내에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하고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p> <p>특히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제정·시행 이후 재활용률이 향상되고 폐기물 소각과 매립 처리가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가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음</p> <p>지난 5년간의 제정·시행 과정에서 폐기물 소각·매립률은 15.2%에서 10.3%로 대폭 줄어드는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시행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아직도 2020년 최종 처분률이 10.3%에 달하는 만큼 순환경제사회 정착 시까지 동 제도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p>	<p>2022-09-02</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의 폐기물 최종 처분률 목표 3.0% 달성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여 순환경제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33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장함</p>	
	<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3인)」</p> <p>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과 취소요건을 규정하고,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p> <p>또한, 고품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품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부과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구체화하고, 인증 취소요건을 신설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강화함 (안 제17조의2)</p> <p>② 재활용부과금 납부 징수유예,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납부·징수 효율성을 제고함 (안 제19조)</p> <p>③ 고품질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 정기검사시 검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안 제25조의8)</p> <p>④ 금지명령을 받은 고품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과징금 체납 시 부과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납부·징수 효율성을 제고함 (안 제25조의11)</p> <p>⑤ 재활용부과금 및 폐기물부담금 징수 관련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함 (안 제37조)</p>	<p>2022-09-02</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7인)」</p> <p>현행법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제품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함유 기준 및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유해물질 기준과 함께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도록 함</p> <p>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과정에서, 또는 자동차의 주행과정에서 합성고무인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p> <p>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p> <p>이에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조, 제10조제3항 등)</p>	2022-09-02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도서관	9/14(수)	「World & Law」 2022-17호 발간 - 사이버전쟁, 어떻게 대응하지?	
입법조사처	주중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 발간	

[별첨1] 제400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9/15(목) 14:00	정치개혁특위	-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
	9/14(수) 14:00	민생경제안정 특위	-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
기재위	9/15(목) 10:00	전체회의	-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통위	9/16(금) 11:00	전체회의	-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 비준동의안 상정
	9/16(금) 전체회의의 산 회후	법안심사소위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행안위	9/14(수) 14:00	전체회의	- 법률안 상정
농해수위	9/14(수) 14:00	해양법안소위	- 법률안 심사
	9/15(목) 10:00	농림법안소위	- 법률안 심사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산자위	9/16(금) 08:20	전체회의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현장 시찰
환노위	9/15(목) 14:00	전체회의	-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 등을 위한 입법 공청회
	9/15(목) 15:30	전체회의	-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
정보위	9/15(목) 11:00	전체회의	-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여가위	9/16(금) 10:00	결산심사소위	-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법률안 상정
예결위	9/15(목) 10:00	전체회의	-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14(화) 14:00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이중성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9/14(화) 16:00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분쟁지역 여성리더 ‘코린 플 레이셔’ 초청강연	김상희·조정식· 윤호중 의원실 등	국회접견실
9/15(목) 09:30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식량안보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은?	임이자·정희용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6(금) 10:00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확보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해식·임호선 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51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9/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3호 발간 - 영국의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입법례	
	9/6(화)	「현안, 외국에선?」 제43호 발간 - 중국의 「대만백서」 발간과 동아시아 외교·안보	
예산정책처	9/5(월)	「NABO Focus」 제51호 발간 - 「2020~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	
입법조사처	9/8(목)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발간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5(월) 14:00	인구전략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전주혜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9/5(월) 14:00	메타버스를 활용한 직업훈련 전망 - 가능성과 한계 국회세미나	임이자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5(월) 14:00	2022 스마트모듈러 국회포럼 - 모듈러 건축 활성화와 인센티브 제도	허영 의원실, 스마트모듈러포럼	국회도서관 강당
9/6(화) 10:00	글로벌 미디어환경,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7(수) 10:30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 토론회	강득구 의원실, 경기도	국회도서관 강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최유리** | 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